

#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동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3
----------	-----

발의연월일 : 2025. 4. 4.

발 의 자 : 김동훈, 한근수, 박은경,  
이정애, 정현미, 원주영,  
한송연, 전해연, 이진환,  
박경원, 김영실, 박윤옥

### 1. 제안 이유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안 제5조)
- 마. 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예산수반사항 : 집행기관 작성

### 5. 관련 법령 :

가. 「지방자치법」

나. 「관광진흥법」

##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5.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6. 주민 주도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 발굴·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5.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6. 주민 주도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을 통해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전이므로 예상되는 비용 및 경비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4. 작성자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4. 10. 2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시행일: 2025. 4. 23.]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